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59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현정, 이정인, 이광성,
송정빈, 이동현, 한기영,
이상훈, 김제리, 김상훈,
이승미, 홍성룡, 김용연,
봉양순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이란 사람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심리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 1996년 UN 세계식품정상회담에서는 식품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권리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은 식품보장의 영역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음.
- 이에 서울시민의 식품보장 차원에서 영양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통해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을 규정함(제1조, 제2조).
- 나. 시장이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다. 제7조를 통해 영양정책 기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라.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문가에 의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마.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을 규정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영양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서울특별시의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하는 것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권이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먹거리의 공급 및 급식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영양섭취 관점에서 영양정책을 세우고 평가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③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나 차별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시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

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섭취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양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영양섭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영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다. 제12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라. 그 밖에 시장의 명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5.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6.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시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영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시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섭취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의 정원은 15명으로 하고 시민건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식품정책과장을 간사로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시의회의 의원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영양 또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영양관련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이 외에 시장이 영양관련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영양 섭취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2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비용이 발생되고, 제9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 및 제12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따른 조사 비용 발생
 - *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제4호의 경우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의 현황이 없어 비용추계곤란
 - *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1,2,3,5호는 기 추진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붙임자료 참고)
 - *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규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140,750천원(연 평균 28,1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청회, 토론회 개최비용 (안 제7조제4항)	2,750	-	-	-	-	2,750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안 제9조)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안 제12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소계(b)	42,350	9,600	39,600	9,600	39,600	140,750
□총 비용(b-a)		42,350	9,600	39,600	9,600	39,600	140,750

다. 비용추계 전제

- 비용 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시민영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5년 주기이므로 공청회, 토론회 등도 매5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개최비용은 서울시의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비용(회당 2,750천원)을 기준으로 산출
- 시민영양정책위원회는 정원 15명 중 수당을 지급받는 의원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13명이고 연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라. 비용추계 산식

-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비용+시민영양정책위원회 운영 비용+영양 및 식생활 조사 비용
-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비용 ≍ 2,750천원(5년마다 1회)
-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48,000천원

$$= \sum_{i=1}^5 (\text{연간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운영 비용
 -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 (위원 수×회당 참석수당×개최횟수)+(회당 업무추진경비×개최횟수)
 - = (13명×150천원×4회)+(450천원×4회)
 - = 9,600천원
-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90,000천원

-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비용(2년마다 1회)
 - = 조사비용×조사횟수
 - = 30,000천원×3회
 - = 90,000천원

※ 참고)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